

총장직 인수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총장선임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총장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선임자"라 함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선임되어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자로 한다.
2. "총장직"이라 함은 정관 제88조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총장선임자의 지위 및 권한) ① 총장선임자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② 총장선임자는 원활한 총장직 수행을 위한 대학의 조직, 기능, 현황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4조 (총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총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임이후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총장의 임기개시일 50일 전부터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대학의 조직·기능 및 현황의 파악
- ② 그 밖에 총장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선임자가 임명한다.

제7조 (총장직 인수에 관한 협조 등) 관련부처의 장은 총장직 인수를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문서관리) 총장직 인수에 관한 사항이 종료된 후 관련문서는 기획처에서 관리보관한다.

제9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및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총장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내규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